

第163回國會
(閉會中)

政治關係法審議
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93年8月23日(月)
場 所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501號室)

議事日程

1. 政治關係法制度海外視察研究報告
2. 委員會運營에 關한件

審査된案件

1. 政治關係法制度海外視察研究報告 1面
2. 委員會運營에 關한件 6面

(11時5分 開議)

○委員長 申相式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會議을 開議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들 날씨도 무더운 여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래 지난 8月14日 幹事會議 合意에 따라서 오늘 第1·2審議班이 지금 계류중인 第1審議班은 通信秘密保護法 第2審議班은 地方自治法을 계속해서 審議하기로 합의된 바 있어서 오늘 會議을 召集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委員님들이 政治關係法制度海外視察中間報告 兼 앞으로 우리 特委의 運營에 關한 論議를 하기 위해서 全體會議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이 合意가 되어서 이 會議을 하게 된 것입니다.

海外視察報告書는 현재 수행한 職員이 정리를 해가지고 兩黨 幹事에게 檢討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作成했지만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審査를 받아서 인쇄해서 各委員님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委員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그동안 우리 特委가 더 많은 會議을 갖지 못한 것은 臨時國會도 있었을 뿐 아니라 또 補闕選舉때문에 會議을 召集하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기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政治關係法制度海外視察研究報告

(11時8分)

○委員長 申相式 議事日程 第1項 政治關係法制度海外視察研究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朴相干委員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相干委員 저희 特委 海外視察結果를 간단히 中間報告形態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正式報告書는 동행했던 우리 國會事務處 職員이 작성해서 與野 幹事が 字句修正을 하고 또 잘못된 내용을 修正해서 최종 확정시킬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7月18일부터 30일까지 12泊13日 동안 獨逸, 英國, 美國의 首都만 방문했습니다.

목적은 選舉法 政治資金法 情報機關關聯法制와 그 運營實態를 파악하는데 있었습니다.

獨逸에서는 首相室長官 聯邦情報部責任者 國內情報部委員인 憲法保護廳責任者가 직접 브리핑을 했고 美國에서도 下院 情報委員長 CIA 首席局長등 성의있는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상당한 예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소득은 우선 外國의 情報機關實態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은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選舉關係에 대해서도 그 實態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獨逸에 갔더니 러시아가 情報機關 改編을 위해서 먼저 다녀갔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目的을 가지고 다녀갔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選舉法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대개 아는 얘기이고 특이한 것은 獨逸의 경우는 野黨이 有給黨職者가 더 많고 기부금도 더 많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與黨은 政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으나 野黨은 政策研究委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有給黨職者를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獨逸統一後에는 獨逸에서도 政治無關心이 고조되어서 地區黨公薦會議의 出席率이 상당히 저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英國의 경우에는 選舉法에 특별히 관심을 두었습니다마는 1人當 選舉費用이 1萬\$ 정도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選舉公營制가 대폭 확대되어서 個人이 돈 쓸 일이 거의 없는 형편에서 美貨로 1萬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約 800萬원 정도의 選舉資金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政黨 中央黨의 選舉支援活動이 있었기 때문에 選舉費用이 이것밖에 안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中央黨의 選舉費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中央黨이 大的인 政策開發을 하고 英國選舉가 政黨選擇形態로 되기 때문에 候補者 個人은 1萬달러 내외로 選舉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英國에서도 中央黨에 대한 寄附金에 대해서 野黨쪽에서 勞組黨쪽에서 一定額 이상의 寄附金を 공개를 法制化하자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美國의 경우에는 各州마다 다름니다마는 選舉에서 25% 이상 得票한 政黨에 대해서만 國庫補助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勞組나 企業은 選舉運動을 제한당하고 있었습니다. 企業은 株主하고 經營陣에 대해서만 選舉運動이 가능하고 一般社員에 대한 選舉運動은 금지되어 있었고 一般大衆을 상대로한 選舉運動은 못하고 勞組員에 한해서 편지같은 것으로 選舉運動을 하고 있다는 報告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企業과 勞組에 本格的인 選舉運動을 허용하면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當

落을 좌우할 수도 있어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企業과 勞組 모두 聯邦選舉에 돈을 대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PAC를 구성해서 政治行動委員會라고 할까 이것을 구성해서 특정한 政策을 밀고 獻金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勞組나 企業에서 政治行動委員會를 구성해서 寄附를 하고 選舉運動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情報機關에 대한 國會의 統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特徴의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情報機關이 分轄되어 있었습니다. 獨逸의 경우는 海外情報에 대해서는 BND라고 해서 聯邦情報部가 首相室長官 傘下에 있어서 海外情報를 전담하고 있었고 國內情報에 대해서는 內務部長官 傘下에 憲法保護廳이라는 것이 있고 軍事情報에 대해서는 國防部長官 傘下에 軍防諜隊가 있었습니다. 이 세 기관의 責任者들은 次官級입니다. 次官도 여러 次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낮은 次官級입니다.

그리고 美國의 경우에는 CIA를 비롯해서 13個 情報機關이 役割分擔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CIA가 海外情報에 대해서는 總括機關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CIA의 長은 인텔리전스커뮤니티라고 해서 情報共同體라고 할까요 이것의 議長을 겸하고 있어서 海外情報豫算에 대한 조정을 인텔리전스커뮤니티에서 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13個 情報機關의 參謀들이 CIA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海外情報豫算은 全體情報豫算의 18%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美國의 경우에는 사실상 世界警察 役割을 하고 있어서 그린지 여러가지 새로운 情報機關이 많이 생겼습니다. NSA 國家安全保障會議에 직속되어 있는 大統領에 직속되어 있는 최대의 情報機關이 있었고 軍事情報를 수집하는 DIA가 있었고 陸軍, 海軍, 空軍, 海兵隊에 별도의 情報機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IO라고 해서 航空寫眞을 분석하는 情報機關이 國防部長官 傘下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國家情報部 이것은 航空寫眞을 촬영하는 U2機와 같은

航空寫眞을 촬영하는 情報機關이 역시 國防部長官所屬下에 있습니다. 기타 國務省 財務省 이런 데에 獨自의인 情報機關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너지省에도 獨自情報機關이 있는 모양입니다.

두번째 이번 視察에서 얻은 두번째 특징은 情報機關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情報蒐集權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海外情報 國內情報 軍事情報로 분할되어 있었고 美國은 國家機關의 기능에 따라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搜查權問題에 대해서는 美國과 獨逸 모든 情報機關이 搜查權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FBI는 搜查權을 가지고 있으나 FBI는 말 그대로 聯邦搜查局입니다. 페더럴 뷰어로우 오브 인베스티게이션 그래서 우리나라의 國立警察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州政府에는 自治警察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플테면 國立警察로서 搜查權을 가지고 있고 또 그 搜查를 위한 情報蒐集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情報調整權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獨逸은 首相室長官傘下에 首相室次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情報調整委員會가 있어서 거기서 情報調整을 하고 있었습니다.

美國은 國內情報에 대해서는 情報調整機關이 없었고 海外情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인텔리전스커뮤니티 情報共同體에서 하고 있었고 CIA局長이 그 議長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CIA의 長이 海外情報의 調整을 맡고 있습니다. 마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國防部長官 傘下에 ... 正確성이 없습니다만 8個 情報機關이 있기 때문에 國防部長官 傘下 情報機關들이 거기에 不服하는 경우가 많아서 意見衝突이 많아서 最終적으로는 國家安全保障會議에서 大統領이 最終적으로 調整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保安監查權은 저희들이 돌아본 獨逸과 美國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든 保安監查權制度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情報機關을 분할하고 권한을 분리

시키는가 하고 물어보았더니 獨逸 憲法保護廳長 대답이 과거 나치의 게슈타포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또 너무 많이 情報機關에 권한을 주면 情報機關이 政府外의 政府 또하나의 政府가 되기 쉽기 때문에 權限牽制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가령 이렇게 搜查權을 주지 않는데 대해서 오는 利點으로는 상당히 哲學的인 答辯을 했습니다.

情報機關에는 機會의 原則 프린서플 오브 아퍼튜너티라는 機會의 原則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령 어떤 間諜을 인지했다라도 즉시 搜查에 착수하지 않고 그 間諜을 이용해서 더 큰 情報을 얻어내는 方案을 자유롭게 강구할 수가 있지만 搜查權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法節次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法制度에 의한 고도의 제약을 받아서 행동의 自由를 잃기가 쉽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議會의 情報機關統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獨逸의 경우에는 3個의 議會 委員會가 情報機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下院 情報統制委員會입니다.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人選原則은 議席比率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情報機關의 활동을 통제하고 두번째로 豫決委員會 特別小委員會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情報機關의 豫算을 최종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基本法10條委員會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盜聽을 관장합니다. 基本法10條委員會라는 특이한 이름이 붙은 것은 獨逸憲法 10條에 盜聽에 대한 規定이 있습니다. 그 規定을 실천에 옮기는 委員會라는 뜻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電話盜聽과 郵便檢閱을 統制하는데 실제로 盜聽과 檢閱을 許可하는 곳은 그 委員會가 직접하지 아니하고 그 傘下에 基本法10條小委員會가 있습니다. G10 코미션이라고 獨逸 말로 코미쨌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사람의 專門家가 盜聽許可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세사람은 情報委員會 구성과 같이 各 政黨의 議席比率에 의해 추천을 해서 任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獨逸憲法保護廳長

은 議會의 統制機構가 너무 많아서 다소 불편하다. 이 점에 대해서 立法을 하려면 하나의 委員會에서 情報機關을 統制하는 것이 더 合理的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참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美國의 경우에는 上院에 情報委員會가 17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情報活動의 企劃과 政策에 관한 事項 情報活動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 되는가의 여부 이것을 審査하는 委員會입니다. 그 구성은 역시 議席比率에 따라서 합니다. 그 委員長은 多數黨이 차지하고 副委員長은 少數黨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下院情報委員會가 19名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下院情報委員會에서는 CIA를 비롯한 모든 情報機關의 情報活動을 監督하는 機關입니다.

그리고 情報機關間的 機能調整을 위한 改編도 下院情報委員會의 所管이다 이렇게 資料를 받았습시다.

下院情報委員會 委員長은 多數黨에서 選出하도록 되어 있고 幹事가 한名인데 그 幹事は 少數黨에서 選出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長의 不在時는 幹事が 代행을 하도록 構成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情報機關에 대한 國會의 統制의 범위와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豫算은 完전한 審議를 해서 決定한다 다음에 비밀활동을 어느정도 監督하는가 다시 말하면 情報責任者들이 國會에서 秘密活動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答辯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가지 提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情報의 출처는 國會에 밝히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것 情報出處報告에 관한 法律이 있어서 그 法律에 의해서 그 情報의 소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비밀에 불일 수가 있게 되어 있었고 또 하나 현재 秘密活動이 진행 중일 때 이 秘密이 밖으로 노출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答辯을 보류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류라는 말을 쓰는 것은 타임의 문제다. 현재 그 秘密活動이 진행 중에 있을 때에는 答辯을 保留하지만 秘密活動이

끝이 난 다음에는 다시 報告를 해야 한다. 그래서 答辯하는데 있어서 時差의 概念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合理的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獨逸憲法保護廳長은 可及的 많은 秘密을 자기는 情報統制委員會 委員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그 이유는 秘密로 할 것이 너무 많으면 그것이 과잉진짜 秘密인가 하는 의심을 품기 때문에 統制委員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많은 비밀을 알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秘密活動을 알림으로써 그 情報統制委員會에서 承認이 아니면 政治的 責任을 情報機關만이 지는 것이 아니라 與野가 다 들어 있는 國會와 分擔을 하기 때문에 情報活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盜聽防止法規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獨逸의 경우에는 內國人이나 外國人을 불문하고 아까 말한 G10 코미쨌온의 許可를 받아서 盜聽이나 郵便檢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미쨌온이 外國大使館 盜聽과 같은 아주 중요한 事項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열리지만 그밖의 경우에는 每月 한번씩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研究했던 緊急盜聽의 문제가 생깁니다. 코미쨌온의 許可를 받기 전에 긴급하게 盜聽을 할 必要性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런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緊急盜聽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聯邦情報部 즉 海外情報部는 國防長官의 承認을 받아서 緊急盜聽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次期 코미쨌온에서 다음에 열리는 盜聽正式許可機構에 報告를 해서 許可를 받고 許可를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盜聽은 즉시 중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國內情報部는 所屬長官인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서 緊急盜聽을 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聯邦情報部 즉 海外情報部는 首相室長官 傘下에 있는 機關인데 왜 엉뚱하게 國防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緊急盜聽을 하느냐 하고 質問했더니 首相室長官의 許可를 받는 것이 原則이지만 首相室長官은 執權者인 首相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緊急盜聽을 許可했을 때에는 政治적으로 부담이 오는 일이 많다. 다시 말하면 盜聽是非의 불꽃이 직접 首相에게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國防部長官으로 緊急盜聽 許可權者를 바꾼 것이라고 對答했습니다.

美國의 경우는 대략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外國情報監視法이라는 法에 의해서 外國機關이나 또는 外國機關員間的 通信에 대한 盜聽은 法務部長官 承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令狀을 얻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美國 國民이 介在되지 아니한 兩當事者間的 盜聽은 法務部長官 承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通信의 一方當事者가 美國人일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外國關聯情報에 관한 고도의 外交的인 性格이나 政治性을 띤 情報蒐集을 위한 盜聽은 特別法院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코트라고 자키들이 부르는 特別法院은 美國大法院이 7名の 聯邦 地方法院判事를 各 地域別로 안배해서 任命합니다. 任期는 6年이고 그 名單이 公開됩니다. 그러면 이 7名の 聯邦地方法院 判事중에 어느 한 사람한테 가셔도 海外關係盜聽 중요한 政治性을 띤 情報盜聽令狀을 발부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은 一般法院과 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고도의 政治性과 外交的 性格을 띤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 노출되면 政治問題化 外交問題化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지금까지 비밀이 노출된 일이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令狀을 신청해서 特別法院에서 棄却된 것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99.9% 許可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各 地域別로 1名씩 해서 7名을 任命을 하는데 워싱턴에 있는 女子判事が 特別法院判事인데 주로 그 사람이 대부분의 令狀을 署名하는 모양입니다.

CIA本部가 있는 워싱턴에 있는 聯邦法院 特別法院判事が 外交盜聽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許可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멀리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이런 사태가 전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外國機關間的 盜聽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法務部長官의 承認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特別法院判事の 令狀을 얻어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外國機關間的 盜聽을 해봤더니 內國인이 外國機關에 가서 電話하는 것이 잡힌다. 그러면 이것은 즉시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令狀을 얻어서 하는 것이 불편이 없어서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內國人的 犯罪搜查를 위한 盜聽은 一般拘束令狀을 발부하는 것과 똑같이 一般判事の 令狀을 받아서 盜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內國人間的 一般盜聽에 관해서는 令狀을 얻는데 令狀을 얻을 시간이 없을 때에는 FBI局長이 자기 直屬上官인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서 24時間 이내에 令狀을 받고 만일 令狀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그 令狀을 기각한 判事が FBI에 대해서 누구누구에게 緊急盜聽을 했는데 이 令狀이 기각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는 모양입니다. 반드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令狀의 기한이 가령 令狀期限을 30日로 해주었는데 10日마다 中間報告를 하도록 해가지고 盜聽할 필요성이 없는데 令狀申請을 해서 발부해 준 것이 드러나면 令狀의 有效期間延長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拘束期間延長을 해주지 않는 이런 原則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盜聽最小化의原則 盜聽이 필요할 때는 盜聽을 하지만 可及的 불필요한 盜聽은 하지 않는다 이런 原則이라고 그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對話, 지금까지는 電氣 通信分野의 盜聽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對話의 盜聽도 令狀主義를 함께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얻어온 귀중한 이 資料를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國內에서 받아 본 資料에 많은 오류가 있었다고 하

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확한 知識을 가지고 與野間에 여태까지 舌戰을 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들인 資料에 대해서 우리 特委次元에서 정확한 번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海外視察을 가서 外國 情報機關 經우에 따라서는 責任者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받는 所得을 얻어 왔기 때문에 美國과 獨逸에서 얻은 이 知識이 우리나라의 公安關係法類의 改正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相式 朴相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報告內容에 대해서 다른 委員님들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2. 委員會運營에關한件

(11時34分)

○委員長 申相式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運營에關한件을 上程합니다.

本 特委運營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權委員 말씀하세요.

○李永權委員 지난번 全體會議에서도 議事의 效率성과 심도있는 會議을 하기 위해서 全體會議과 班別會議을 서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特委 議決로 해서 合意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會議에 당도해서 뭔가 全體會議을 기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全體會議을 定例化시킬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물론 많은 法律案을 가지고 全體會議에서 심도있는 熟意를 論議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개의 特委委員들의 意思를 開陳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도 안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會議을 定例化시켜서 적어도 1週日에 한번정도는 全體會議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事案의 重大性에 비추어서 수시로 全體會議에 붙여서 심도있는 論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全體會議에서 모든 法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質疑를 할 것이

있으면 質疑를 하고 그래서 大體的으로 論議를 한 다음에 全體會議의 議決에 의해서 이것은 어떤 班에 넘겨서 보다 더 심도있는 熟意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것이 풀리지 않을 때는 다시 全體會議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論議를 한 다음에 班別會議에 넘겨서 最終的으로는 全體會議을 통해서 그 法案을 확정하는 이러한 節次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議決로서 양해가 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提議를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全體會議을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열 것이냐 이것을 論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特委活動에 대한 國民的인 시각이 뜨겁고 期待感에 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을 우리가 회고해 보면 特委活動이 별로 성과있는 運營을 못 한 것이 아니냐 그 이유로서는 물론 司正政局이기 때문에 靑瓦臺가 주축이 되어 모든 改革作業을 하고 그러다보니 國會가 상당히 무력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國家의 機能이 어차피 立法 司法 行政이 제대로의 구실을 다 해야 되겠고 國會의 位相定立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國政運營에 모든 國民들의 동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우리 特委를 運營하거나 또 班別 論議를 할 때에도 마치 靑瓦臺나 他 어떤 대의 눈치나 指示에 의해서 움직이는 형태는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定期國會를 앞두고 定期國會 이전에 改革案 懸案이 많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各黨別로 具體的인 골격만이라도 우선 熟意를 하고 또 提示를 해놓고 그리고 定期國會 9月10日以前에 全體를 通過시켜 확정을 짓는 이러한 열의를 보이는 것이 國民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案이나 法律案을 내놓는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도 提示를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8月末까지는 提示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各幹事들께서는 그 동안에 懸案 法律案에 대해서 어떠한 進陟度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를 說明을 해주고 언제까지 提出을 해주겠

다는 것도 아울러서 오늘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定期國會는 豫算國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定期國會 이전에 우리에게 부여된 政治改革法 一般에 대한 熟議를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運營해 주시기를 提案합니다.

○委員長 申相式 委員님 하실 말씀 없어요? 姜秀淋委員 말씀하세요.

○姜秀淋委員 지금 우리가 政治特委를 가동한 날짜가 5月10日 입니다. 앞으로 政治特委를 할 수 있는 날짜가 60日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0日안에 우리가 어떻게 政治改革法案을 완성시키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進行되어온 것을 살펴보면 運營 自體가 무계획적으로 운영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本委員으로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60日동안에 지금 懸案에 계류된 政治法案을 改革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성시키고 또 改革하려면 우리가 치밀하게 議事日程을 세워가지고 그 日程 안에서 法律 하나하나를 검토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과인 政治特委에서 各 法案에 대한 計劃書를 가지고 치밀하게 議事日程을 끌어갔느냐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겨우 2班이 日程을 정기적으로 해서 한 個의 法案을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各 法에 대해서 具體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審議해서 어떻게 改革하겠다는 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수시 수시 만나가지고 그때그때 가서 會議를 해가지고 몇 條 審議하다가 끝나치고 몇 條 檢討하다가 끝나치고 지지부진하게 우리가 이 政治特委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했더라면 大統領이 이런 緊急命令을 發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政治特委에서 우리가 改革을 해가지고 國會 본연의 자세에서 法을 만드는 任務를 했더라면 이런 緊急命令이 發動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일 올해 定期國會까지 政治特委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改革을 못

한다면 다시 우리는 政治外의 다른 방법으로 해서 改革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상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全體會議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도 全體會議에서 具體的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것입니다. 막연히 무슨 法을 내시오...

具體的 例를 하나 들겠습니다.

國家保安法은 우리 兩黨 幹事間에 改革하기로 合意된 法이고 여기에 上程된 法입니다. 大統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政治特委에서 안한다 그것은 안하기로 했다 이런 原理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기로 했으면 약속해서 法을 내고 이 안에서 어떤 計劃을 해서 내는 것이 우리 政治特委人의 약속이지 大統領會談에서 안했다 해가지고 國會가 안한다고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점을 모두 여기에서 밝혀내서 하나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日程을 맞추는 오늘의 會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本委員의 뜻입니다.

그래서 委員長님과 幹事께서는 兩黨에서 조속히 法을 내가지고 各 法은 언제언제까지 審議를 마치겠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주어야지 우리도 다른 일을 해가면서 이 日程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계획없이 언제 政治特委를 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빠지기도 하고 이래서는 우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日間の 計劃書를 오늘 분명히 實務陣과 幹事間에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委員長 申相式 다른 委員 하실 말씀 계신 분 있으십니까?

말씀하실 분 계시지 않으시면 李永權委員과 姜秀淋委員님 말씀에 대해서는 委員長으로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答辯드릴 성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委員長으로서 우리 特委가 그동안 활동을 전연 안한 것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7月 下旬에도 國會 끝난 후에 약 5日間 우리가 우리 特委에 관련된 모든

法案들에 대한 公聽會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國會 特委 委員들이 海外視察를 했고 돌아오자마자 國會議員 補闕選舉 때문에 委員들이 참여해야 되는 사정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各 黨이 제출되지 아니한 法律案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동안 우리 特委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選舉가 끝난 후에 바로 또 臨時國會가 5日間 개최되었기 때문에 兩黨 幹事間에 지난 臨時國會 끝난 이후에 만나서 오늘 會議을 하도록 合意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체적이고 日程에 맞는 法案提出이나 되어야 되는 計劃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姜秀淋委員님께서 建議한 대로 兩黨 幹事 合意下에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日程이 잡혀지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 法案提出이라는 것이 各 黨에서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民自黨만 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民主黨도 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 法案을 하루 속히 修正案을 만들거나 새로 法案을 만들어서 政治改革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異議가 없습니다. 그러나 法案이 되려고 하면 與野가 合意가 되어야 됩니다. 合意가 되어야 通過되는 것이지 어느 政派에서 案을 내놓았다고 해서 바로 무슨 法案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委員 여러분들이 改革立法 우리 政治關係特委에 負荷된 法律案이 조속히 되어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 委員도 한분도 異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委員會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한다는 決意를 하면서 오늘 會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永權委員 아까 全體會議을 먼저 하도록 어차피 議決이 되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全體會議을 최소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各 法案 첫번에 提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法案 提案은 全體會議에서 하도록 하고 또 全體討論을 提案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하고 두번째

效率성을 기하기 위해서 班別 審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즉 하다가 마지막에 爭點事項 몇가지 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면 그 班에서만 爭點으로 삼아서 結論을 내릴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 全體會議을 한번 열어서 심도있는 熟議를 할 때에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두번 그리고 마지막에 議決은 물론 全體會議에서 하겠지요. 그래서 최소한도 한 法案에 대해서 세 번 정도의 全體會議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議決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委員長 申相式 그런데 李永權委員 말씀하신 會議運營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인데 그러한 문제들은 議決事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幹事會議에서 앞으로 合意가 되어가지고 李委員이나 또 姜委員이 말씀하신 모든 뜻이 幹事會議의 合意事項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會議이 運營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答辯드릴 수가 있습니다.

○李永權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全體會議에서 그러한 全體會議 回數를 논의 못할 데는 아니고 결정못할 데도 아닙니다. 幹事會議에서 또 그것을 具體적으로 논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幹事會議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日程을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리고 방금 李委員 提案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法案이 既 이미 提出되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法案은 既定事實화된 것이구요. 새로 法案이 提出될때 全體會議에 보고해서 提案說明을 하고 大體討論을 약간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提案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與黨側에서도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을 것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意見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法案을 全體會議에 報告없이 審議를 했는데 어떤 法案이 나왔고 그 내용이 어떠한가는 全體會議에 報告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申相式 그러니까 그것이 幹事會議 때 이것은 全體會議에서 報告를 들어볼 필

요가 있으면 듣는 것입니다.

○朴煥太委員 지금 特委가 國民들의 바람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은 各黨에서 문제된 法案들을 빨리 제출하는 것입니다. 法案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마당에 特委 全體會議을 열어봤자 진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各黨의 내부사정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黨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이달말까지 늦어도 定期國會開會前까지 필요한 法案을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黨內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民主黨側에서도 적어도 定期國會開會前까지는 政治特委에 繫留되어 있는 모든 法案을 제출해주세요. 그래야 特委가 제대로 움직이고 소기의 期間內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저희들은 定期國會開會前까지 모든 法案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대로 日程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朴相千委員 安企部法도 포함된 것입니까?

○朴煥太委員 安企部法은 政府側에서 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모든 繫留된 法案을 우리 黨에서는 定期國會前까지는 낼 것입니다.

○李沅衡委員 國家保安法 安企部法은 第2審議班에서 처음에 姜三載委員이 2審議班共同委員長이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7月末까지 해서 與黨이 改正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8月末 방금도 朴幹事 얘기는 定期國會前까지 이렇게 자꾸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與黨이 먼저 法案을 내줘야 改正이 되는 것이지 약속도 안 지키면서 民主黨側에서 法案을 빨리 내라고 하는데 2審議班에서 國家保安法 安企部法은 7月末까지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國家保安法은 여기에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다 봤는데 지금도 與黨은 안내고 있습니다. 8月末이 아닌 定期國會前까지면 9月9日인데 그렇게 되다가 자꾸 넘어가서 今年12月31日 넘으면 끝나버리니까? 特委를 만든 이유가 뭐니까? 한번 약속했으면 그대로 해주셔야지 8月31日까지 내겠다고 했다가 定期國會前까지로 또 물러났습니다. 이

러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國政監査도 해야 되고 法案審議도 해야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與黨도 8月31日까지 우리가 審議할 수 있는 法律案에 대한 代案이면 代案 改正案이면 改正案을 낼 수 있도록 委員長께서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朴煥太委員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달末까지 늦어도 그때 안되면 한 일출된인 定期國會前까지인데 그 일출이 뭐 그렇게 立法上 차질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黨도 이렇게 낼테니까 民主黨도 필요한 法案을 적어도 定期國會前까지 내야 된다 지금 民主黨이 내 놓은 案이라고는 安企部法 하나밖에 없어요. 選舉法 政黨法 政治資金法 지금 뭐 내 놓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實名制가 施行돼 가지고 全國이 난리인데 가장 중요한 政治資金法을 지금 野黨에서 내 놓지 않았습니까. 마치 다 내 놓고 낼 게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李沅衡委員 우리는 약속한 바 없습니다.

○朴煥太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네 탓 내 탓할 것 없이 各黨이 노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그리고 時限을 꼭 우리가 약속을 한다면 이달末 늦어도 定期國會前까지는 각종 필요한 法案을 전부 내야 된다 이렇게 서로 政治的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野黨도 우리쪽 눈치보지 말고 소신있게 法案을 내 놓으라고요. 항상 우리 것 먼저 나오면 거기다가 몇 줄 고쳐 가지고 이렇게 내 놓는데 그러지 말고 소신 있는 黨案을 내 놓으세요.

○朴相千委員 地方自治法 安企部法 전부 野黨이 내 놓으니까 거기다가 몇 줄 고쳐 가지고 내 놓고는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委員長 申相式 金榮珍委員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金榮珍委員 여차피 우리가 各班에서 審議하는데 法律案이 제출이 안돼서 審議를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런 論爭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 審議할 案件이 있으면 그것 열심히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

에 빨리빨리 내서 하고 이렇게 合理的으로 하면 되지... 저는 여러분들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8月末前까지 내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도 이해가 가고 또 부득이하면 定期國會前까지 내겠다는 얘기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審議하고 있는 地方自治法이나 通信秘密에관한法이나 현재 내놓은 法案조차도 審議를 못하고 있으니 부지런히 그것하면서 그것 끝나기 전에 또 다른 法案을 서로 내 가지고 우리 運營이 實質적으로 成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드리는 것입니다.

○鄭均桓委員 여기에 政治關係特別委員會活動을 위한 參考事項이라는 것을 보니까 定期國會가 끝나고도 다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申相式 定期國會 끝나면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잘 읽어 보세요.

우리 特委가 國會 本會議決議로 12月末까지로 돼 있지만 定期國會가 閉會가 되면 特委活動도 하기 곤란하고 해 봐야 또 本會議 通過가 안되니까 그래서 다 감안이 돼 있습니다.

○鄭均桓委員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定期國會가 끝날때까지 特委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면 今年 定期國會에서는 通過를 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日程을 대충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定期國會 中間時點까지 特委活動을 한다든가 우리 스스로의 權限을 분명히 정해 가지고 그때까지 못하면 어떤 政治力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代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定期國會 전체가 이 日程에 들어가면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앉아 가지고 卓上空論만 하다가 결과적으로 改革立法에 차질이 올 可能性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定期國會가 열리는 期間 전체가 우리 特委活動의 期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國政監査 끝날때까지라든가 國政監査前까지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政治特委에서 委任을 다른데로 해서 나머지 機構를 새로

與野間에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期間을 計算해 가지고 그 안에 어떤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政治特委가 國民으로부터 상당히 비난도 받을 수 있는 可能性도 있고 또 歷史적으로 改革立法을 해야 될 때에 하지 못한 지리멸렬한 議員으로서의 責任感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討論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만일의 경우 여기에서 具體적인 討論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면 與野幹事한테라도 이런 정신을 살려서 合意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申相式 알겠습니다. 만 委員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李永權委員 얘기만 해서 제기만 할 게 아니고 하나라도 결론을 짓지요. 제가 이렇게 提案을 합니다. 첫째로 아까 幹事들에게 委任을 하는 형태로 委員長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러지를 말고 오늘 全體會議에서 全體會議은 아까 그러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못박아 주고 또 아까 法律案 提案에 대해서는 이달 말 아니면 定期國會前까지 提案을 한다 이렇게 아마 與野가 인식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懸案에 대해서는 定期國會前까지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 懸案問題에 대해서 몇 年동안 이미 많이 다루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단지 몇 가지 쟁점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特委에서 이러쿵 저러쿵 遲延한다고 하는 것은 國民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또 지금 현재 改革政局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소신을 좀 가지고 허리띠를 매고 밤잠을 못자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빨리 斷案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全體會議은 그런 요령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法律案 懸案問題에 대한 提案은 적어도 定期國會 이전까지 提案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내리도록 하지요.

○委員長 申相式 지금 李永權委員께서는 全體會議을 언제부터 한다 議決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法律案은 언제까지 낸다 決議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은 議決事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李委員이나 여러 委員님들이 말씀하신 뜻이 우리 全體委員들이 다알고 앞으로 幹事會議를 해서 그 뜻이 수렴될 수 있도록 우리 特委를 運營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1週日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1週日에 아무 할 일도 없는 날에 무조건하고 會議召集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決議를 지금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李永權委員 委員長이 그것은 말이지요. 委員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지요. 일단 提案을 했으면 議決에 붙이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 1週日에 한번 하자고 하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조금 修正提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왜 그것을 幹事會議에 委任한 다든지 적당하게 運營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委員長 申相式 幹事會議 때에 오늘 委員들이 말씀하신 것을 肯定的으로 다 수렴을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特委가 活性化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써 오늘 會議를 마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3分 散會)

○出席委員

申 相 式	姜 信 玉	金 榮 駟
金 榮 珍	朴 憲 基	朴 燾 太
白 南 治	黃 潤 鎰	姜 秀 淋
朴 相 千	李 永 權	李 沅 衡
鄭 均 桓	洪 思 德	金 海 碩
曹 駟 鉉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韓 世 東
立 法 審 議 官	朴 奉 國
立 法 審 議 官	申 世 華